

광주지방법원 2017. 2. 8 선고 2016가단34859 판결 [압류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광주광역시 동구

변론 종결 2017. 1. 18

판결 선고 2017. 2. 8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광주 동구 B 대 349.9㎡ 에 대한 2016. 6. 30.자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15484로 집행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광주 동구 B(종전 주소 광주 북구 C) 소재 토지 및 건물(이하,이 사건 부 등산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원고는 1985.경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차량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앞 도로 24m(이하,이 사건 도로라 한다)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였다.

다.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은 2005. 3. 16. 원고에게 2005년도 도로점용료 840,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,2010 . 2. 22. 원고에게 "도로점용료840,000원 및 가산금 656,880원 합계 1,496,880원(이하,이 사건 도로점용료라 한다)이체납되었음을 이유로 2010. 3. 15.까지 자진납부하고 미납부시 화순군 D 소재 토지를압류한다"는 내용의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,2010. 3. 25. 화순군 D 소재 토지에 관한 원고 소유의 지분을 압류하였다.

라. 이후 2011. 10. 1.자 행정구역정비(경계조정)로 인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할권 (도로점용료 체납액 및 부동산 압류권 등 포함)이 피고에게 이관되자,광주광역시북구청은 2011. 9. 29. 미수납한 2005년도 도로점용료에 관하여 행정구역정비에 따른 전액감액을 하였고,2015. 12. 23. 화순군 D 소재 토지의 원고 소유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해제하였다.

마.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은 원고에게 2005년도 도로점용료에 관하여 2013. 7. 5.자, 2015. 9. 13.자,2015. 12. 3.자 각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였고,2016. 1. 1.자 및 2016. 4.7.자 각 압류예고서를 발부하였으며,2016. 6. 29.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통지서를 발부하였다. 한편 동구청장은 2016. 6. 27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촉탁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은 2016. 6. 30. 압류등기(이하,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)를 완료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1내지 5호증,을1, 2. 3호증(가지번호 포함)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과 판단

가.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도로 점용료에 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,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

주장한다.

나. 판단

도로법 제69조 4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,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3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체납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는 바, 위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.

결국 이 사건 압류등기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압류해제를 신청하고, 위 신청을 거부하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처분이 있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,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현